1. 가습기 살균제 배상방안: 패널 검토 추가 보고서

1. 머리말

옥시레킷벤키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4차 조사에서 2019년 4월 5일 또는 그 이전에 1등급 또는 2등급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및 특정 태아 피해자들을 위한 가습기 살균제 배상방안(이하 "기존 배상방안")을 시행하였고, 전문가 패널은 기존 배상방안의 진행과정에 대한 본 패널의 검토 결과를 정리한 2019. 7. 12. 자 전문가 패널 검토 보고서("기존 패널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기존 패널보고서 작성 이후, 옥시레킷벤키저는 두 차례에 걸쳐 추가적인 배상방안을 발표하였고, 현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4차 조사에서 2019년 12월 24일 또는 그 이전에 1등급 또는 2등급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및 특정 태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가습기 살균제 배상방안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배상방안(기존 배상방안을 포함하여 이와 같이 확대 시행된 배상방안을 이하 "배상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전문가 패널은 의료 및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기구로서, 기존 패널보고서 작성 이후 시행된 배상방안에 대해서도 이를 공평무사하게 감독함으로써 해당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배상규정에 따라 공정한 처우를 받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기존 패널보고서 작성 이후 배상방안의 이행 경과에 관한 사항을 업데이트하고, 2020. 9. 25. 자로 개정되어 시행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과 관련하여 옥시레킷벤키저가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본 패널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추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본 추가 보고서에서는 기존 패널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본 패널의 의견을 재차 기술하지는 않았으며, 본 추가 보고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 패널보고서와 동일한 입장을 유지함을 밝혀두고자 한다.

2. 경과 업데이트

2.1 배상신청 등록 및 합의 현황

배상지원 사무국에 의하면 기존 패널보고서 작성 이후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총 16명의 4차 조사 피해자들이 추가로 배상방안에 등록하였고, (기존에 등록한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총 20명의 피해자들과 추가로 배상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배상지원 사무국에 의하면, 2021. 3. 31. 기준으로 4차 조사에서 2019년 12월 24일 또는 그 이전에 1등급 또는 2등급 판정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67명 전원이 배상방안에 등록하였으며, 옥시레킷벤키저는 등록 피해자 167명 중 166명과 배상합의서를 체결하였다고 한다.

현재 배상방안에 등록한 피해자와 배상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1건은 피해자가 사용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배상방안과 무관한 '고체' 제품이라는 점을 근거로 옥시레킷벤키저가 배상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고, 신청인은 기존에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것 이외에 현재까지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해 별다른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

2.2 배상신청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배상지원 사무국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배상방안에 따라 배상신청을 처리하는 데에 소요된 평균 시간은 아래와 같다.

> 주요 사실 및 수치:
> 각 배상신청 유형별로 옥시레킷벤키저가 모든 증빙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배상신청을 처리하는 때까지 소요되는 평균 시간: 42 영업일
> 어린이 사망 케이스: 30 영업일
> 어린이 상해 케이스: 51 영업일
> 어른 사망 케이스: 52 영업일
> 어른 상해 케이스: 38 영업일
> 케이스의 절차 진행에 가장 많이 소요되었던 시간은 242 영업일이다.

이에 의하면, 기존 배상방안에 비해 전반적으로 배상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었는바, 기존 패널보고서 작성 이후 적용대상이 된 피해자의 수가 기존 배상방안의 적용대상 피해자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인 처리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보인다.

본 패널은 기존 패널보고서에서 배상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관련 피해자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옥시레킷벤키저가 배상신청 처리 과정을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고 대내외적 의사소통이나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 지연의 요소가 없었는지 살피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먼저, 기존 패널보고서 작성 이후에는 신규 배상신청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배상지원 사무국에서 비교적 신속하게 배상신청을 처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배상지원 담당자에 의하면 배상절차 지연과 관련한 신청인들의 불만 표시도 기존 배상방안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한다.

한편, 배상절차 진행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던 케이스의 경우, 피해자의 사용기간에 대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위원회의 결정[1]이 지연됨에 따라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파악되고, 이는 배상지원 사무국 또는 배상지원 담당자의 배상신청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 지연의 요소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기존 패널보고서의 권고사항 관련

3.1 D그룹 관련

본 패널은 기존 패널보고서에서 옥시레킷벤키저가 피해자들을 D그룹으로 분류함에 있어 최대한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D 그룹으로 분류되는 피해자의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배상지원 사무국에 의하면, 배상방안 하에서 총 6명의 피해자가 D 그룹 피해자로 분류되어 배상합의를 하였다고 한다. 위 6 명의 D그룹 피해자는 배상방안에 따라 배상합의를 이미 완료하였으며, 기존 패널보고서 작성 이후 D 그룹으로 분류된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위 6명 중 1명은 기존 패널보고서 작성 이후 배상합의가 이루어졌으나 D그룹 분류는 기존 패널보고서 작성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함).

---

1) 배상지원 사무국에 의하면, 배상지원 사무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확인한 해당 피해자의 가습기살균제 사용기간이 피해자의 의료기록에 나타난 건강상 피해 발생 이후이고, 사용기간 이후 별도의 건강상 피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피해자에게 2019. 12. 23. 자로 D 그룹 잠정 통지를 하였다고 함. 이후 해당 피해자는 2020. 3. 초순경 사용기간에 관한 추가자료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사용기간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회의 개최 지양의 내부 방침으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신청자에 대한 업무가 지연됨을 2020. 3. 15. 경 홈페이지(https://www.healthrelief.or.kr/home/main.do)에 게시하면서 상당 기간 그 결정을 유보하였고, 2020. 10. 26. 이 되어서야 비로소 위 사용기간을 해당 피해자의 건강상 피해 발생 이전의 기간으로 변경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위원회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함.

4차 조사에서 배상방안에 등록한 피해자 수 대비 D그룹 분류 피해자 수가 매우 적은 점, 결과적으로 D그룹으로 분류된 피해자들과 배상합의가 체결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옥시레킷벤키저는 배상규정 절차에 의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D그룹 피해자를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패널은 D그룹으로 분류된 피해자들에게도 옥시레킷벤키저의 향후 치료비 지원 제도가 적용될 수 있고 배상규정상 건강상태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 배상금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 D 그룹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한다.

3.2 상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옥시레킷벤키저는 2020. 6. 초순경 상해 피해자 총 140명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 1인당 마스크 20매, 핸드워시 3개, 손소독제 3개, 비누 4개를 보급하였다고 한다. 배상지원 사무국에 의하면,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마스크 구매가 어려워지고 개인위생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하여 상해 피해자들 대한 향후 치료비 지원의 일환으로 마스크를 포함한 위생용품 세트를 보급한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옥시레킷벤키저는 상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위생용품 세트를 보급하면서 CEO가 작성한 안부 편지를 함께 송부하였다고 한다.

본 패널은 기존 패널보고서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염려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는바, 위와 같은 조치는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4.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에 따른 변화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의하면, 기존의 피해질환 및 질환별 건강피해 인정기준을 모두 삭제하고,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 포함)를 질환의 구분 없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포함하도록 하였다(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2조 제3호).

또한, 사업자분담금 및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을 설치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 장해급여 등)를 일원화하여 지급하도록 하였고(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12조,

제31조), 특별유족조위금 지급금액의 상향[2], 장해급여의 지급기준의 신설[3], 요양생활수당 지급범위의 확대[4]로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지급을 강화하였다.

더 나아가, 정부출연금은 구제급여 항목 중 요양급여로만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만 가습기살균제사업자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여(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 25조 제2항, 시행령 제27조 제2항) 나머지 구제급여 항목들은 사업자분담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피해자의 증가, 장기구제의 필요성 등으로 피해구제자금의 추가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 대하여 추가로 분담금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35조의2).

위 개정법의 시행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에는 피해구제자금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의 재원이 옥시레킷벤키저를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들의 기업분담금(및 추가분담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과관계의 정도에 따라 피해자들을 분류하는 기존의 판정 방식도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배상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폐손상을 입은 피해자들(즉,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용과 폐 손상 또는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정부가 "가능성 확실" 또는 "가능성 높음"으로 판정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 개별 기업 차원에서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배상방안을 장래에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더 나아가 보다 근본적이고 전체적인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한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옥시레킷벤키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본 패널은 옥시레킷벤키저가 가습기살균제 문제와 관련된 다른 회사들 및 피해자 대표들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회사들이 공동으로 사용 제품의 구분 없이 모든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또한, 다른 관련 회사들도 그러한 방안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다수의

---

2) 기존 약 4,000만원(특별장의비의 15배)에서 약 7,000만원(특별장의비의 38배)으로 상향됨(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2조)

3) 피해지원 유효기간 만료 시, 장해가 남아 노동능력이 상실된 정도에 따라 초고도장해부터 경도장해까지 4단계로 분류하고, 초고도장해는 약 14,400만원, 고도장해는 약 8,600만원, 중등도 장해는 약 5,700만원, 경도 장해는 약 2,9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함(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1조의2)

4) 폐기능이 정상인의 70%이상~80% 미만인 피해자(경미한 피해자)에게도 매월 약 12.6만원을 지급함(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9조)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컨센서스를 도출해 내는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본 패널은 옥시레킷벤키저가 최선을 다해 그와 같은 방안의 도출에 노력해 줄 것을 권고한다.

한편, 위와 같은 배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별도의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과는 별론으로, 옥시레킷벤키저는 현재 배상방안을 상당기간 유지할 의사인 것으로 이해하는 바, 본 패널은 그와 같은 조치가 공정성과 일관성의 관점에서 적정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옥시레킷벤키저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옥시레킷벤키저가 배상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핵심가치로 설정한 '존중', '공정', '신속', '투명'이라는 요소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 배상방안에 따라 배상합의를 체결한 피해자와 관련하여 향후 치료비 지원이나 건강상태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의 구제 등에 흠결이나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한다.

이성보 변호사

서명: _____

이용진 교수

서명: _____

김동수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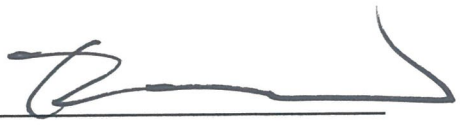
서명: